

유엔인권이사회

제 37 차 회의

2018 년 2 월 26 일 - 3 월 23 일

의제 4

인권 상황은 이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별협지지위 비정부기구, 유럽양심의 자유 협의회 (CAPLC) 서면 진술서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1996/31 에 따라 배포된 다음 서면 진술서를 수신했다.

[2018 년 1 월 28 일]

유럽 내 중국 종교 난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의 망명 신청 거부

1. 이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CAG, 전능신교) 로 알려진 종교 단체 교인들에 관한 것이다. 전능신교는 1991년 중국에서 창립된 신흥종교이다.
2. 중국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신도 수가 약 400 만 명 (<https://www.adhrrf.org/china-ma-xingrui-20140709.html> 에 전재된 문서 참조) 에 이르는 전능신교는 적어도 1995 년 이후로 중국에서 금지 및 박해당했다. (1995 년에 작성된 문건 참조 <https://www.adhrrf.org/china-ma-xingrui-20140709.html>)
3. 추후에 중국 정부는 전능신교에 대해 2014 년 맥도널드 여성 살인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 혐의를 씌우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학계에서 이러한 혐의가 단순히 CAG 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적 가짜 뉴스의 대표적 사례라고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구언론들은 이를 반복해 보도했다. 사실, 살인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단체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전능신교와는 무관했으며 다른 신앙을 가진 단체였다. (마시모 인트로빈 참고, "잔인한 살인, 잔혹한 살인, 짐승을 죽여라": 2014 자오위안 맥도널드 '킬트 살인' 조사" CESNUR 학술지 1(2017): 61-73, 마시모 인트로빈 및 데이비드 브룸리, http://cesnur.net/wp-content/uploads/2017/09/tjoc_1_1_6_introvigne_ter.pdf "루 윈춘 / 장 판 단체," 세계 종교 및 영성 프로젝트,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2017 년 10 월 16 일 발간 참고 <https://wrldrels.org/2017/10/16/lu-yingchun-zhang-fan-group/>) 우수 학자들의 연구에서 이밖에도 전능신교를 둘러싼 여러 루머들이 가짜 뉴스로 판명되었다. (홀리 포크 교수 연구 참조. http://cesnur.net/wp-content/uploads/2017/12/tjoc_1_2_5_folk.pdf)
4. 중국 형법 제 300 조는 종종 "사악한 길트" 로 번역되는 이른바 사교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교의 개념은 명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단 교리" 또는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교리에 해당한다. 중국 형법의 영문 번역본은 UN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부 및 기타 빈 소재 국제기관이 발간했다. (<http://www.fmprc.gov.cn/ce/cgvienna/eng/dbtyw/jdwt/crimelaw/t209043.htm>) 이 번역본의 제 300 조는 다음과 같다: "미신집단,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하거나 또는 미신을 이용하여 국가 법률, 행정법규의 실시를 해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용한다" 는 사실 "활동한다" 를 의미하며 이는 해당 규정에 대한 중국 재판소의 일관적인 해석이다. (<https://web.archive.org/web/20130402233641/http://www.chinanews.com/fz/2013/04-02/4699177.shtml>) 또한 "특별히 엄중한 사안" 을 명시함으로써 더 강력한 처벌 부과가 가능해진다.
5. 실제 중국에서는 사교로 간주되는 단체의 경우 1995 년 이후로 정기적으로 발행 및 갱신되는 종교 "불법 단체" 리스트에 포함된다. 전능신교는 일관되게 해당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http://www.china21.org/docs/CONFI-MPS-CHINESE.htm> , http://www.cesnur.org/2016/daejin_irons_list.pdf)
6. 내부 통계를 기준으로 전능신교는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380 명의 교인이 중국에서 체포됐다고 추산한다. (이미 36,572 개의 사건이 기록됨. <https://www.godfootsteps.org/proofs/>) 유수의 비정부기구인 프리덤하우스는 2014 년에서 2016 년 사이에 중국에서 "이단 종교" 소속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자 (者) 중 80 퍼센트가 전능신교 교인이라고 보고했다.
7. 전능신교는 또한 소속 교인들이 구금 중에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하거나 고문당한 여러 사례에 대해 고발했다. (http://www.cesnur.org/2017/almighty_china_report.pdf) 우리는 관련 증인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간주하며 회자되는 사건의 수만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개별 조사 사실을 입증한다. 중국 내 전능신교에 대한 박해는 그 범위와 정도에 있어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오늘날 국제적인 기준에서 가장 최악의 종교적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망명 신청을 한 거의 모든 전능신교 교인들이 다양한 구실로 거부당했으며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은 기타 국가에서 역시 대다수의 신청이 거절당했다.

8. 2004년 유엔난민기구 (UNHCR) 국제 보호 지침 : 종교 난민 신청에 따르면 국가는 망명 신청자가 개인적으로 박해 당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 없다. 단지 해당 개인이 "근거가 충분한 박해 공포심"을 느낀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전능신교 교인이 중국 내에서 단순히 해당 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박해당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소속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전능신교의 모든 교인은 체포 및 구금을 당한다.

9. 일부 국가 난민 위원회는 전능신교 교인이 수년간 도시와 마을을 옮겨 다니며 구금을 피했다는 사실이 이들이 박해 받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항의했다.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능신교는 중국에서 수백만의 교인을 두고 있으며 박해받는 여타 종교와 같이 비밀리에 활동하는 것과 더불어 당국에 의해 이미 전능신교 교인으로 신원이 확인된 형제자매를 숨기기 위해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거처도 없이 체포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계속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은 엄밀히 국제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에 해당한다.

10. 경우에 따라, 망명 신청자는 자신의 종교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로 비난받고 전능신교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있었다. 2004년 유엔난민기구 지침 제 30항에 따르면, "개인은 교리나 관습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자신의 종교를 근거로 박해당할 수 있다. 지식의 부족은 문제가 되는 지역의 특정 종교 관습에 대한 연구 또는 제소 사건의 주관적, 개인적 측면을 이해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망명 신청자가 "정보통"에 의해 묘사된 종교 교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정보통"은 전능신교의 종교 규범 텍스트 또는 학술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민 당국은 주로 단순히 중국 정부 출처의 내용을 번역하거나 반복한 언론 기사와 캐나다 이민 및 난민 위원회의 과거 보고서를 참고한다. 이러한 문헌 자료는 난민위원회 문건이 아니지만 난민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 위원회는 방대한 자료를 제공했으나 해당 보고는 2014년에 작성됐으며 당시에는 언론 기사 혹은 중국 정부 자료만을 참고할 수 있었다.

11. 망명 신청자들은 전능신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신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성령 또는 사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Man Used by the Holy Spirit, or Priest)인 자오 웨이산 (Mr. Weishan)의 역할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종교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주장은 전능신교의 신학적 측면을 오해한 것이다. 전능신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육신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쓰여진 말씀 (Word)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가르친다. 전능신교 교인의 신학 체계와 영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논하거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전능신교는 또한 행정상의 지도자 격인 자오 웨이산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개인숭배를 방지하려고 한다. 학자들은 신자들이 자오 웨이산의 가르침이나 설교에 대해 논할 때 그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12. 우리는 중국 당국 및 관계자들이 전능신교가 종교가 아니며 일반 범죄에 연루된 "컬트" 또는 사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능신교 교인에 대한 난민 신청 수용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 및 "컬트"의 뚜렷한 과학적 구분이 없으며 "컬트"는 빈번하게 여타 종교 단체 또는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단체를 차별하기 위한 편리한 꼬리표로 이용됐다. "컬트" 혐의의 일부로 여러 국가의 난민 위원회는 이른바 "정보통"이 전능신교가 "가족제도에 저항한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몇몇 망명 신청자가 처음 가족에 의해 전도되고 이후 보호받았다는 사실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컬트"라는 꼬리표가 붙은 단체에 대한 고정 관념적 혐의에 불과하며 다른 모든 종교와 같이 전능신교 역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 어떤 종교도 만일 기존의 가족 네트워크에서 활동하지 못한다면 2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백만의 교인을 거느릴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 유수의 신흥종교 학자들은 언급된 바와 같이 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 전능신교에 대한 혐의 부과는 박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진 가짜 뉴스라고 판명했다 (위 참조). 난민신청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범죄에 참여했다는 혐의가 없다. 설사 일반 범죄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사실이 아님), 사교로 박해 받은 단체의 일원의 경우 중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

13. 위 언급된 보고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내 유사 사례에서 100여 명의 망명 신청자가 수용됐다.

14.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중국 내 전능신교에 대한 박해의 심각성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당사국들에서 지

속적으로 중국의 박해에서 탈출한 전능신교 교인의 난민 지위 신청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체포 및 구금 이상의 형벌의 위험이 있는 중국으로 다시 송환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